

# 瑞山市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：1998. 8. 20

## 3. 提案理由

폐기물 관련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관계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.

## 4. 主要骨子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규정함(안 제2조)
-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조정(안 제5조)
- 폐기물의 분리, 보관방법 및 시설 용기 등의 설치관리 기준 개정(안 제5조)
-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
-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의 공급, 또는 판매 절차와 위탁 근거마련(안 제11조, 12조)

- 생활폐기물수집·운반수수료의 현실화와 부과 징수기준 마련(안 제15조)
- 폐기물 매립장 이용자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 근거마련 (안 제19조)

## 5. 參考事項

### 가. 입법예고

- 예고방법 : 서산시 공보게재
- 예고기간 : '98. 6. 5 ~ 6. 25(20일간)
- 공고번호 : 서산시 공고 156호

### 나. 관련 근거법령 자료

- 폐기물관리법, 지방자치법
- 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

## 6. 檢討意見

-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,
- '98.6. 5 서산시공고 제15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하고,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성안 되었음.

- 다만, 안제6조 제2항 "완전히 제거"를 "제거"로, 안제10조 제2항 "시명"을 "기관명"으로 안제24조 제1항 다만 "폐기물관리법"을 다만 "법"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며,
- 안제8조 3항의 재활용품수입 장려금과 제4항의 폐기물 투기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되었으나,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기준이 불명확하며,  
또한, 안제25조 과태료의 경감을 50%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경감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, 별표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.